



「公害」와 「環境汚染」



權 肅 构

〈本協會理事〉

〈延世大·環境公害研究所長〉

우리나라에서 「公害」라는 말이 나돌기 始作한 것은 1962年境이라고 記憶 한다.

원래 公害라는 用語는 日本에서 「고오가이」라고 부르고 日本에서는 이 미 1953年境 소위 미나마따水銀 集團中毒 事件 以後에 크게 대두되었던 社會問題를 公害라고 표현해왔고 이것이 日本新聞에 繼續報導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關心을 끌게된 것이다.

1963年에 우리나라에서 「公害防止法」이 公布될 때에도 公害라는 用語에 대해서 거의 異論이 없이 그 말을 인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公害防止法은 거의 日本의 當時의 大氣污染防止法과 水質污染防止法을 혼합해서 參考하여 초안이 되고 최고회의에서도 별 異論없이 일괄통과된 법령이었다.

이때 公害防止法에서 「公害」라 함은 「排出施設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 惡臭, 가스로 인한 大氣污染과 化學的, 物理學的, 生物學的 要因으로 인한 水質污染, 그리고 騷音, 振動에 의한 國民의 保健에 미치는 危害와 生活環境을 沢害함으로서 發生되는 被害」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公害의 定義는 公害防止法을 公布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발될 수 있는 公害를 防止하기 위한 政府의 意思를 表현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그것은 제一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이 推進되는 段階였고 불원간에 本格化될 工業化 過程에서 日本에서와 같이 심각한 公害問題가 유발될 것을 豊慮하였기 때문이다.

이때의 公害防止法에는 排出施設과 汚染物의 종류와 範圍가 限定되어 規定되어 있었고 그 범위에 屬하는 排出施設만이 規制의 對象이 되고 그 밖의 小規模業所, 自動車, 都市下水等은 量的으로 큰 汚染源임에도 不拘하고 規制를 받지 않았다.

그 結果는 이 法이 1971년까지 施行되면서도 소위 大氣나 水質污染 그리고 騷音, 振動은 더욱 繼續해서 深化되는 全國各地에 都市, 工業團地가 조성되면서 公害가 확산된 것이다.

1971年에 公害防止法에 대한 一部 전환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종전에 公害가 발생하면 이것을 적발단속하는 사후조치로 부터 排出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그 排出施設을 설치할 때에 사전허가를 받고 完工後에 사용신

고를 하고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汚染物排出을 適格된 施設에서 기대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法改正 조차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大氣, 水質污染은 심화되어 갔고 그 피해도 증대되어 왔다.

1970 年代에 들어서 公害를 느끼는 住民과 公害防止法을 관掌하는 保健社會部關係官 사이에는 公害에 대한 정의에 격차가 생겨났는데 空氣나 물, 海水, 토양이 汚染되고 騒音이 甚해서 진정서를 내면 대부분의 경우에 당국에서는 公害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排出許容基準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웃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심야에 騒音이 발생하거나 악취가 나서 주민생활에 고통을 주어도 그 騒音은 허용범위 内였고 악취는 극히 미약하다는 것이었다. 또 분명히 海洋의 양식장이 산업폐수의 방류로 인해서 양식물이 폐사하여도 그것은 排出施設에서 排出許容基準 以内的 농도이기 때문에 公害가 될 수 없고 따라서 民法의 상권관계의 위법행위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피해가 新聞에서는 公害事件으로 보도되었지만 公害防止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예가 거듭되면서 國民들은 당국에서 고의로 公害를 防置하므로서 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제량하고 또 발전과정에서는 불가피한 必要惡이라는 가설까지 대두되었다. 경제발전 우선정책이 法의 시행을 사실상 지연시켰고 그것이 公害를 조장한 원인이라는 설명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큰 원인은 公害防止法을 무색하려 하는 「公害의 定義」에 있었다. 公害防止法과 그 시행령을 종합해서 보면 公害란 그 排出源이 어느 규모 이상의 공장사업장에 극한되고 법으로 규정된 한정된 오염물과 높은 배출허용기준에서 위배된 경우에 한해서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나마도 대기오염·수질오염은 정의가 없어서 주관적으로 판단되었고 잠재적이거나 축적적인 위험은 현실적 피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공해방지법상의 공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공해는 공해방지법에서 정의되는 狹義의 공해라고 크게 격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상의 공해로 공해방지법에서는 다분히 허용하게 되었고 오늘날과 같이 환경오염이 심화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공해는 공해방지법에 위배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개개의 배출원이 아무리 법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배출원이 더욱 다양화 됐고 수적으로 증가한 상태에서는 환경오염이나 그 피해를 방지할 수는 없다.

1977년에 당국은 솔직히 환경오염을 시인하고 공해방지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환경보전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공해방지법의 결함은 다분히 시정되었다고 하지만 1984년 금일에 이르기 까지 많은 결함이 더 발견되어 보완되어 왔다.

배출시설은 확대적용되고 오염물, 특정유해물도 그 규정이 확대되었고 일부 외국에서 아직도 통과시키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큰 발전이라고 여겨 진다. 그러나 아직도 공해방지법의 殘滓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환경청에서는 결함이 발견되는 대로 급속히 보완시정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보전의 목표가 표현되고 있는 것은 환경기준이다.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과연 이 환경기준은 타당한 목표일까. 라는 것이다.

이미 고도로 오염된 도시나 공업단지 부근에서 당장에 협행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과거의 공해방지법의 잔재이며 막대한 투자와 보상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기준이 목표라는 뜻에서 본다면 당장에 달성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오염을 看過할 수는 없다. 최소한 환경기준은 항목의 확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快適한 環境」이 표현되고 그것이 目標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행基準보다는 強化되어야 하고 全國全地域에도 達成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大氣中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年間平均 0.04ppm이었다고 할 때에 이것은 분명히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環境汚染이지만 現行法의 環境基準에는 適法이고 따라서 對策이 否定되고 그것은 「公害」의 전철을 밟는 것이 될 것이고 더욱 역설적으로는 그 地域의 행정 한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汚染源을 유치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목표는 합리적이고 도달하기 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목표가 제시되었을 때에 비로서 대책을 위한 투자·기술개발이 유발되고 國民의 자발적 環境汚染防止 노력이 法 以上的 效果를 거둘 것으로 믿어진다. *

의식개혁 9대실천요강

정직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풍조를 과감히 주방한다.

질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창조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책임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고질적인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를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한다.

본분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히 부여 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수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주인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부정·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국민화합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은 파벌,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한다.

가정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第6回'84國際環境污染防治機器展示會

社團法人 環境保全協會가 주催하는 國際環境污染防治機器展示會를 아래와 같이 開催
하오니 諸君은 參加를 바랍니다.